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5편 교회 경제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48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교역자 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감리회 본부부담금 : 감리회 본부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및 기타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각 연회 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는 별표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수익금 처분)에 따라 배당 지원한다.</p> <p>2~3 (생략)</p> <p>4. 은급부담금 : 은급부담금은 교역자 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 결산액의 1.5%를 교역자 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p> <p>② 예산회계 원칙 : 예산회계의 원칙이라 함은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입·지출 예산의 편성, 의결절차, 감사 및 결산에 관한 일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p> <p>③ 고정자산 : 고정자산은 개체교회, 감리회 본부 또는 감리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5편 교회 경제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48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부담금</p> <p>1. 감리회 본부부담금 : 감리회 본부부담금(이하 ‘본부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u>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0%를 분담 납부하는 부담금</u>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부담금 중에서 20% 범위내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를 계상 배당하여야 한다. <u>감리회본부 지원비</u>와 교역자 양성비는 별표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수익금 처분)에 따라 배당 지원한다. <개정></p> <p>2~3 (좌동)</p> <p>4. 은급부담금 : 은급부담금은 교역자 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u>수입결산액의 2%를 교역자 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u>을 말한다.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산하 단체, 기관 등에서 취득,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기타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p> <p>④ 일반회계 :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동 소속기관, 단체 등에서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외에 통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일반적인 회계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감리회 본부 건물 수익금</p> <p>【488】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개척선교비 및 <u>연회선교사업비</u>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감리회 본부 건물 수익금</p> <p>【488】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개척선교비 및 <u>감리회본부 지원비</u>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p>	<p>연회선교사업비를 본부지원비로 변경</p>
	<p>【000】 제6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u>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현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총회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다.</u>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5.10.30.)</p> <p>【00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3.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p> <p>【578】 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각 <u>연회 선교사업비와</u> <u>교역자양성비</u> 및 <u>개척선교비와</u> 재단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p>	<p>3.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p> <p>【578】 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u>감리회본부 지원비</u>와 <u>교역자양성비</u> 및 <u>개척선교비와</u> 재단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 <개정></p>	
<p>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p>	<p>5.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p> <p>개정 2015.00.00. <u>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u> <신설></p>	
<p>【593】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4번지 8호에 둔다.</p>	<p>【593】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p>	
<p>【595】 제4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p> <p>① <u>선교, 사회봉사 및 장학사업</u></p> <p>② 은퇴 및 명예퇴직 교역자를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p> <p>③ 별세 교역자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p> <p>④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⑤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염출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p> <p>⑥ 그 밖에 필요한 부대사업</p>	<p>【595】 제4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p> <p>① <삭제></p> <p>① 은퇴 및 명예퇴직 교역자를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p> <p>② 별세 교역자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p> <p>③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④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염출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p> <p>⑤ 그 밖에 필요한 부대사업</p>	
<p>【598】 제7조(임원의 임기)</p> <p>① <u>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② <생략></p>	<p>【598】 제7조(임원의 임기)</p> <p>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개정></p> <p>② <좌동></p>	
<p>【600】 제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p>	<p>【600】 제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이사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 <u>감독회장</u>이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u>감독회장직의</u> 재임기간으로 한다.</p> <p>②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장이 되며 그 밖의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p>	<p>① 이사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 <u>감독회장</u>이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u>감독회장직의</u>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p>	
<p>【603】 제12조(이사의 해임) 이사로서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한 후 보고한다.</p>	<p>【603】 제12조(이사의 해임) 이사로서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한 후 <u>주무관청에</u> 보고한다. <개정></p>	<p>‘주무관청’ 삽입</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이사회</p> <p>【605】 제14조(소집)</p> <p>① <생략></p> <p>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u>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9월에 소집한다.</u></p> <p>③ ~④<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이사회</p> <p>【605】 제14조(소집)</p> <p>① <좌동></p> <p>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u>실시하되 ,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1월에 소집한다.</u> <개정></p> <p>③~④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재정</p> <p>【608】 제17조(재산)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p> <p>①<생략></p> <p>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p> <p>1.<u>매년 전국 교회에서 납부하는 교회은급부담금과 교역자은급부담금</u></p> <p>2~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재정</p> <p>【608】 제17조(재산) <좌동></p> <p>① <좌동></p> <p>②</p> <p>1. <u>교회은급부담금과 허입은급부담금</u> 및 <u>교역자은급부담금</u></p> <p><개정></p> <p>2~3 <좌동></p> <p>③ <좌동></p>	<p>허입은급부담금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③ <생략>		
<p>【610】 제19조(경비) 본 법인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제3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p> <p>① <생략></p> <p>②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p>	<p>【610】 제19조(경비) 본 법인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u>수익</u>은 제3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u>수익</u>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p>	과실→수익
<p>【612】 제21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u>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u>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p>	<p>【612】 제21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u>하반기 정기이사회 전까지 편성</u>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p>	
<p>【613】 제2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행한다.</p>	<p>【613】 제22조(회계감사) 감사는 <u>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외부 회계법인 감사 연 2회 이상을 행하고, 필요시 감사를 할 수 있다.</u>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수익사업</p> <p>【620】 제29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사업)의 사업을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p> <p>①~② <생략></p> <p>③기타 수익사업. 단, 모든 사업은 사전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은급기금은 사용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수익사업</p> <p>【620】 제29조(수익사업)</p> <p>①~② <좌동></p> <p>③ 기타 수익사업 <개정></p> <p>④ <u>모든 사업은 사전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u> <신설></p>	③항의 단서조항을 ④항으로 신설하고 은급기금 사용제한 폐지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정관의 개정</p> <p>【621】 제30조(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와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단서 규정은 입법의회 결</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정관의 개정</p> <p>【621】 제30조(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와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p>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직권으로 하며, 입법의회 인준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p>의를 받지 아니한다.</p>		
<p>【622】 제31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될 때까지는 현재의 교역자은급규정에 의한 <u>은급사업위원회</u>가 존속된다. ②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면 ‘정관’과 ‘교역자은급규정(동 시행규칙 포함)’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또는 자구 수정을 하여 정리한다.</p>	<p>【622】 제31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될 때까지는 현재의 <u>교리와 장정</u>에 의한 <u>은급재단이사회</u>가 존속된다. <개정> ②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면 ‘정관’과 ‘교역자은급<u>시행</u>규정(동 시행규칙 포함)’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또는 자구 수정을 하여 정리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631】 제2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u>미주특별연회는 정연회 시행 이후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u> 단, 2008년 총회 이전까지는 종전법을 따른다.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631】 제2조(적용범위) ① <좌동> ② <u>미주특별연회는 은급이사회가 제정한 규정과 세칙에 따른다.</u> <개정> ③ <좌동></p>	
<p>【632】 제3조(기금구성) 은급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u>허입부담금</u> :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당해연도 <u>생활비(본봉) 1개월분</u>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p>	<p>【632】 제3조(기금구성) 은급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u>허입은급부담금</u> : 허입 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 당해연도 <u>생활비 1개월분</u>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교역자은급부담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1984년도 이전에 이미 연회원으로 입회한 교역자와 1984년 이후 준회원 허입자로서 허입부담금을 미납한 교역자는 납입하는 해의 1개월분 생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준회원 허입시에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정회원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시 10%의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 <p>③ 본인납입액 :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신(新)은급제도의 납입액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고, ‘본인납입액’ 및 ‘교회지원액’은 위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시 납입을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의 비율은 교역자은급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교역자와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 또는 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은급법 및 시행규정에서 정한 ‘월 납입액’(‘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을 미납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미납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교역자와 개체교회가 합계 2개월분 이상의 ‘월 납입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신(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본인 및 배우자, 유가족의 은급금을 받을 권한이 소멸된다. 다만, 은급재단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미납된 금액을 일시에 납입 	<p>② 교역자은급부담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역자은급부담금</u>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u>교역자가 연회원 허입시에 허입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u> <개정> 교역자가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시 10%의 <u>감액</u> 처분한다. <개정> <p>③1~3<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u>하면 신(新)은급제도에 의한 감리연금 및 기타 은급제도에 의한 은급금 수령 권한이 다시 발생한다.</u></p> <p>3. <u>‘월 납입액’은 기준금액을 20만원으로 하되, 교역자 및 소속 개체교회의 재정에 따라 해당 교역자는 감리연금 가입시 또는 납입기간 중에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소 ‘월 납입액’은 10만원으로 하며, 최대 ‘월 납입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u></p> <p>④ 교회은급부담금</p> <p>1.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결산액의 1.5% 를 교회 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p> <p>2~3 <생략></p> <p>4.교회가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모든 의회 회원권이 보류(「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4장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제6항, 제7장 제84조(연회의 조직), 제8장 제113조(총회의 구성) 제5항)되며, 교역자 목회시무연한 계산에서 미납된 기간은 제외한다.</p> <p>⑤ 교회지원액</p> <p>1. 은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 중 <u>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 시무하는 교역자와 파송한 선교사의 ‘월 납입액’ 중 교역자가 납부하기로 한 ‘본인납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u></p> <p>2. 은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 중 <u>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있는 교회는, 그 교역자에 대해서는 ‘교회지원액’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개체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적립금’ 지급을 폐지한다.</u></p>	<p>③교회은급부담금</p> <p>1.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결산액의 2% 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p> <p>2~3 <좌동></p> <p>4. 교회가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한 횟수만큼 교역자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한다. <개정></p> <p>⑤<삭제> ⑥<삭제> ⑦<삭제></p> <p>④ 교역자가 은퇴 전 감리교회를 탈퇴하거나 퇴회할 경우 납부한 은급비를 돌려 주지 않는다.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3. 퇴직적립금은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교역 중인 개체교회의 경우에 기존과 동일하다.</p> <p>⑥ 감리연금 납입 유예 : 신(新)은급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미자립교회 등 교역자와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감리연금의 ‘월 납입액’에 대하여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역자 및 해당 개체교회는 은급재단에 감리연금 납입을 최장 2년까지 유예 신청할 수 있다.</p> <p>⑦ 의연금 : 제3조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이 기탁하는 의연금</p> <p>⑧ 기타 수익금 : 기금의 예금 또는 신탁과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실금과 기타 수익금</p>	<p>⑤ 본부 전입금: 본부 부담금 중 일부(20%이내)<신설></p> <p>⑥ 기타 수익금 : 기금의 예금 또는 신탁과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실금과 기타 수익금</p>	
<p>【634】 제5조(위원회 조직 및 임기)</p> <p>①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구성한다.</p> <p>② 각 위원회 위원구성은 5~7명 이내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p> <p>③ 각 위원회에 위원장, 서기 각 1명을 둔다.</p> <p>④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p> <p>⑤ 각 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연 1회 정기적으로 모이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한 때는 수시로 모일 수 있다.</p>	<p>【634】 제5조(위원회 조직 및 임기)</p> <p>①~④<좌동></p> <p>⑤ <u>각 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연 1회 정기적으로 모이며, 필요한 때는 수시로 모일 수 있다.</u> <개정></p>	
<p>【636】 제7조(기금운영) 은급기금은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에만 예치하여 관리하고, 은급사업비는 기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서 사용한다.</p>	<p>【636】 제7조(기금운영)</p> <p>① <u>은급기금은 반드시 제1금융권 예치 및 국공채 매수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u> <신설></p> <p>② 은급사업비는 기금 중에서 사용한다. <신설></p> <p>③ <u>수익사업은 기금의 30% 내에서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운영한다.</u> <신설></p>	<p>①, ② 항으로 구분 신설</p> <p>③ ‘기금 운영’ 신설</p>
<p>【638】 제9조(감사) 감사는 은급사업의 운영 일체를 연 2회 이상 감사한다.</p>	<p>【638】 제9조(감사)</p> <p>① 감사는 은급사업의 운영 일체를 연 2회 이상 감사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개정> ② 공인회계법인 감사를 년 2회 실시 한다. <신설></p>	
<p>【639】 제10조(지방과 연회와의 관계) ①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소속한 연회 준회원(또는 협동회원) 허입 예정자 및 정회원 재허입 예정자들의 당해연도 생활비 액수를 조사하여 은급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소속한 교회의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을 은급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연회원)들의 <u>생활비(본봉)</u>를 조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은급부로 보고한다. ④ 각 연회 본부는 교역자의 이동사항을 매월 정리하여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연회 본부는 은퇴교역자, 공상퇴회자, 별세 교역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연회 1개월 전까지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p>	<p>【639】 제10조(지방회와 연회와의 관계)<개정> ①<좌동> ②<좌동> ③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연회원)들의 <u>생활비</u>를 조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은급부로 보고한다. <개정> ④ 각 연회 본부는 교역자의 이동 및 <u>변동사항을</u> 매월 정리하여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각 연회 본부는 은퇴교역자, 공상퇴회자, 별세 교역자들의 명단과 <u>변동사항을</u> 작성하여 연회 1개월 전까지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은급금 급여</p> <p>【640】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감리회에서 부부 목사(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할 경우, 부부 중 1인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② <u>감리연금</u> :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연회에</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은급금 급여</p> <p>【640】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u>매월 지급하되 92만원을 상한선으로 한다.</u> 다만, 감리회에서 부부 교역자(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할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p>	<p>⇒ 기금 고갈 방지 및 수익자 원칙 적용</p> <p>② 감리연금 <삭제>하고 개별</p>

현행	개정안	비고
<p>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p> <p>1.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65세 이전에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신(新)은급제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은급기금으로 전입하여 은급 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수령할 수 있다.</p> <p>2.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재직기간 동안 '월 납입액'을 납입하고 65세에 은퇴하여 감리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2033년부터 은급기금 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은퇴 연령이 늦춰지면 은급기금 지원도 늦춰진 연수만큼 이연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해당교역자가 '월 납입액'을 기준금액 대비 감액하여 납입한 경우 감액비율에 따라 은급기금 보조금도 감액하여 지급한다.</p> <p>3.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 및 교회지원액을 통한 신(新)은급제도에 의하여 65세 이후 감리연금 수령시 은급기금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p> <p>③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공상퇴회사 은급금 : 목회 중 은퇴 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연회에서 자원 퇴회한 교역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 원로목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p> <p>④ 유족은급금</p> <p>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별세한 원로목사와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은퇴은급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목회 내조 만 7년을 기준으로 차등 <-20%> 지급한다.</p> <p>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감리연금</p>	<p>②1,2,3<삭제></p> <p>② <u>군목, 교목, 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은퇴은급금을 50% 만 지급한다.</u> <개정></p> <p>③ <u>공상퇴회사 은급금</u> : 목회 중 은퇴 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연회에서 자원 퇴회한 교역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 은퇴교역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p> <p>④ 유족은급금 : 별세한 은퇴교역자와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은퇴은급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목회 내조 만 7년을 기준으로 차등 <-20%></p>	<p>가입</p> <p>② 신설개정안: 국가지원 특별연금 수익자 은퇴금 50% 축소지급</p> <p>④ 유족은급금: 각 호 통합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약관에 준한다.</p> <p>⑤ 장례보조금</p> <p>1. <u>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원로목사와 재직 중인 연회원 교역자, 별세한 교역자의 배우자와 원로목사 배우자가 별세할 시에 즉시 지급한다.</u></p> <p>2. <u>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경우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u></p>	<p>지급한다. <u>유족 가운데 유족은급금과 은퇴은급금을 모두 받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하나만 지급한다.</u> <개정></p> <p>⑤ 장례보조금 : <u>은퇴교역자와 재직 중인 연회원 교역자, 별세한 교역자의 배우자와 은퇴교역자 배우자, 재직 중인 교역자의 배우자가 별세할 시에 즉시 지급한다. 장례보조금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한다.</u> <개정></p> <p>2.<삭제></p>	<p>⑤ 장례보조금 :각 호 통합 개정</p>
<p>【641】 제12조(재직기간)</p> <p>① <u>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부담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u></p> <p>② <u>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 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u></p> <p>③ 정년은퇴나 자원은퇴, 공상으로 인한 자원은퇴 및 퇴회자는 모두 연회 자격·과정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연회에서 정년은퇴, 자원은퇴, 공상으로 인한 자원퇴회를 하여야 한다.</p> <p>④ <u>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2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65세 이상이 되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하는 교역자는 정년은퇴시까지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한다.</u></p> <p>⑤ <u>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휴직과 정직 기간 및 교역자 허입부담금과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u></p> <p>⑥ <u>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미과인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휴직으로 간주한다.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91조(연회의 직무) 제3항 제2호)</u></p>	<p>【641】 제12조(재직기간)</p> <p>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부담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개정></p> <p>②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 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개정></p> <p>③<좌동></p> <p>④ 교역자가 미과, 유학, 휴직, 정직 기간 및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p> <p>⑤ 교역자가 미과인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휴직으로 간주한다. <개정></p> <p>⑥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과 <u>공상자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u></p>	<p>④, ⑤항에서 이동</p> <p>⑤, ⑥항에서 이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⑦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과 공상자 및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u>해당 연회 자격심사위원회 결의와</u> 은급재단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⑧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순교자 및 피랍 교역자는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 시까지로 목회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p> <p>⑨ 공상이라 함은 교역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와 과로로 인한 질환으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소속 연회의 <u>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u> 자원은퇴 및 퇴회한 때로부터 은급 혜택을 받는다.</p> <p>⑩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휴직기간과 국외 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는다.</p> <p>⑪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 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 해 올 경우 국외 거주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 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p> <p>⑫ 1983년 이전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합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회원과 준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2. 협동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에서 본처목사로 안수를 받은 연도부터 계산한다. 다만, 협동회원 전도사인 경우는 1975년부터 계산한다. 3. 재허입교역자는 재허입부터 계산하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p><u>의를 받아야 한다.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u> <개정></p> <p>⑦ 교역자 중 순교자 및 피랍 교역자는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 시까지로 목회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 <개정></p> <p>⑧ 공상이라 함은 교역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와 과로로 인한 질환으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소속 연회에서 <u>공상은퇴 및 공상퇴회한 때로부터</u> 은급 혜택을 받는다. <개정></p> <p>⑨ 교역자의 휴직기간 및 유학,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p> <p>⑩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 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 해 올 경우 국외 거주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 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p> <p>⑪<삭제></p> <p>⑫<좌동></p> <p>⑬ <u>다음의 경우 은급재단 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u>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하는 사람 2. 감리회 및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 교회 재산의 손실을 입히거나 교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한 사람 4. 국가법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p>⑥, ⑦항에서 이동 사정판정에서 연회자격심사제의</p> <p>⑦, ⑧항에서 이동</p> <p>⑧, ⑨항에서 이동</p> <p>⑨, ⑩항에서 이동</p> <p>⑩, ⑪항에서 이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⑬ 허입부담금의 납부가 지연된 교역자는 지연된 기간만큼 재직 기간에서 제외한다.</p> <p>⑭ <u>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를 하든지, 감리회 및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든지, 또는 교회 재산의 손실을 입히거나, 교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은급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한다.</u></p> <p>⑮ <u>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이중 직업을 갖거나 사실상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u></p>	<p>5. 은퇴 후 1년 이내 교회를 폐쇄한 사람</p> <p>6. 교회 재산을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 재산으로 보유한 사람</p> <p>⑭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이중 직업을 갖거나 실제로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운영·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p>	<p>⑬, ⑭항에서 이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은급대상 지급제한조치</p> <p>⑭, ⑮항에서 이동</p>
<p>【642】 제13조(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p> <p>① <u>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 및 우선순위</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인의 배우자. 다만,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 2. 18세 미만의 자녀 3. 60세 이상의 부모. 다만, 부양책임을 질 다른 가족이 없을 경우에 한함 <p>② <u>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한다.</u></p>	<p>【642】 제13조(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u>교역자의 유족 범위 및 우선순위는 각 호와 같다.</u> <개정></p> <p>①1~3 <좌동></p> <p>② <삭제></p>	
<p>【643】 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p> <p>① <u>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u></p>	<p>【643】 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u>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u> <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1.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의 유가족에게는 은퇴은급금을 기준으로 하고, 별세한 원로목사의 유가족에게는 유족은급금을 기준으로 한다.</p> <p>2. 은퇴한 교역자 및 그 유족이 국외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의 20개월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민한 지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p> <p>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감리연금 운용약관에 준한다.</p>	<p>① 은퇴교역자의 유족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p> <p>② 재직교역자의 유족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p>	
<p>【644】 제15조(기본액수(기준금)) 급여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으로서 해마다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① 은퇴은급금 :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② 공상퇴회자은급금 : 모든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③ 장례보조금</p> <p>1.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p> <p>2.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p>	<p>【644】 제15조(기본액수(기준금))급여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으로서 해마다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① 은퇴은급금 :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p> <p>② 공상퇴회자은급금 :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p> <p>③ 장례보조금</p> <p>1. 교역자와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p> <p>2. <삭제></p> <p>2. 장례보조금은 별세 2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p>	<p>장례보조금 지급기한</p>
<p>【645】 제16조(은급금 수령자의 의무사항)</p> <p>① 은급금 수령자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금융기관 예금구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645】 제16조(은급금 수령자의 의무사항)</p> <p>① 은퇴예정자는 은급부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②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국외 거주자는 해외거주증명을 매년 7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은급금 수령자가 국외로 이민하였을 경우 국내에 수령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은급금 수령대리인을 계속시키든지 또는 갱신하든지 공증 받은 위임장을 매년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위임받은 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제3항의 제반서류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은급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p>	<p>② <좌동></p> <p>③ <삭제></p> <p>③ <u>제2항의 제반서류를</u> 미제출하였을 경우 은급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p>	<p>③, ②와 내용중복으로 <삭제>하고 ④항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수납과 지급방법</p> <p>【646】 제17조(수납방법) 허입예정자의 허입부담금은 해당 연회에서 <u>과정·자격심사를 받기 전까지, 교회은급부담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은급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수납과 지급방법</p> <p>【646】 제17조(수납방법) 허입예정자의 허입은급부담금은 해당 연회에서 <u>연회원 과정고시 서류를 제출 할 때,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해당 년도에, 교회은급부담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은급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u> <개정></p>	
<p>【647】 제18조(지급방법) 모든 은급금 지급은 <u>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월 지급한다.</u></p>	<p>【647】 제18조(지급방법) 모든 은급금 지급은 <u>매월 15일</u> 지급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15. 10.30)</p> <p>【648】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신설></p>	<p>부칙 추가</p>
<p>7.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대화복지재단 정관</p>	<p>7. 사회복지법인 <u>기독교대한</u>감리회 대화복지재단 정관<개정></p> <p><u>개정 14차 2006. 5. 1 (사회복지과-12038)</u></p> <p><u>개정 15차 2007. 7. 9 (사회과-14649)</u></p>	<p>전체 감리교회 명칭삽입</p> <p>‘정관 제·개정 목록’ 추가</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2007. 7. 4 (주민생활계획과-5921)</p> <p>개정 16차 2009. 6.11 (주민복지과-16842)</p> <p>개정 17차 2009.10.26 (사회복지과-10194)</p> <p>개정 18차 2010. 6.21 (사회복지과-16978)</p> <p>개정 19차 2011. 7.28 (사회복지과-17482)</p> <p>개정 20차 2011. 8.18 (사회복지과-19365)</p> <p>개정 21차 2011.12.06 (사회복지과-28228)</p> <p>개정 22차 2012. 4. 2 (사회복지과-8436)</p> <p>개정 23차 2012.10.25 (복지지원과-8131)</p> <p>개정 24차 2013. 1. 2 (복지지원과-141)</p> <p>개정 25차 2013.10. 4 (복지지원과-27000)</p> <p>개정 26차 2014. 1. 3 (복지지원과-275)</p> <p>개정 27차 2014.10. 2 (복지지원과-34321)</p> <p>개정 28차 2014.12.31. (복지지원과-44736)<개정></p>	
<p>제1장 총 칙</p> <p>【654】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장 총 칙</p> <p>【654】 제1조(목적)</p> <p>① 이 법인은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u>이 법인의 정관 및 제반 규정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위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할 경우 그 사항은 효력이 없다.</u><신설></p>	<p>☞ 본 법인의 감리교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개정함.</p>
<p>【656】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u>사무소는</u>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번지의 27에 둔다.</p>	<p>【656】 제3조(사무소)</p> <p>① 이 법인의 <u>주사무소는</u> 서울특별시 종로구 <u>인사동5길 29</u>에</p>	<p>☞ 사업기관 확대 및 감리교회와의 협력을 위한 분사무소 설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주</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둔다.<개정></p> <p>②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를 둔다.<신설></p> <p>1.인천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십곡로 124번길 10</p> <p>2.대전분사무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33번길 29</p> <p>3.충남분사무소 : 충청남도 공주시 영명학당 1길 13</p> <p>4.부산분사무소 :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229번길 2가 40</p> <p>5.광주분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52번길 20</p> <p>6.전남분사무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주산길 45-8</p> <p>7.강원분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51번길 30</p>	<p>소 변경(도로명주소)에 의하여 개정함.</p>
<p>【657】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p>①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사업</p> <p>②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 사업</p> <p>1. 영유아 보육사업</p> <p>2. 아동복지사업</p> <p>3. 청소년복지사업</p> <p>4. 여성복지사업</p> <p>5. 노인복지사업</p> <p>6. 장애인복지사업</p> <p>7. 정신장애인 재활사업</p> <p>8.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p> <p>9. 재가복지사업</p> <p>10. 지역복지사업</p> <p>11. 기타 사회복지사업</p> <p>③ 기타 이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p>	<p>【657】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p>①<좌동></p> <p>②1~10<좌동></p> <p>11. 의료복지사업<신설></p> <p>12. 해외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사업<신설></p> <p>13. 11호와 <좌동></p> <p>③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자산 및 회계</p> <p>【659】 제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타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u>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① 제5조(자산의 구분) 제2항 제1호의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재단법인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의 동의를 받되 처분으로 얻어지는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기본재산 중 각 사회복지관으로 지정된 재산의 경우 해당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자산 및 회계</p> <p>【659】 제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타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u>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용도변경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개정></p>	
<p>【660】 제7조(경비)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u>수익금과</u>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p>	<p>【660】 제7조(경비)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u>수익금, 기부금과</u>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p>	
<p>【661】 제8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이 속하는 <u>법인일반회계와</u>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p>	<p>【661】 제8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이 속하는 <u>법인회계와</u>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개정></p>	‘사회복지사업법’ 준용
<p>【662】 제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u>말일까지로</u> 한다.</p>	<p>【662】 제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u>말일로</u> 한다.</p>	
<p>【663】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u>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u>’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663】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u>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u>’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p>	‘사회복지사업법’ 준용
<p>【664】 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u>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u>’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p>	<p>【664】 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u>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u>’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개정></p>	‘사회복지사업법’ 준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 원</p> <p>【666】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① 이사를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대표이사 포함)</p> <p>② 감사 2인</p> <p>③ 제1항의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 원</p> <p>【666】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① 이 법인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11명으로 하며, <u>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출한 4명(감독회장의 동의를 얻은 자), 사업기관 대표 2명,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선임한다.</u> <개정></p> <p>② <u>감사를 2인으로 한다.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이로 선임한다.</u><개정></p> <p>③ <삭제></p>	
<p>【667】 제14조(임원의 임기)</p> <p>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3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667】 제14조(임원의 임기)</p> <p>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는 <u>【414】 의회법 제119조(총회의 직무) ⑩, 5호를 준용한다.</u><개정></p> <p>② <좌동></p>	
<p>【668】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p> <p>① 이사와 감사는 감리교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p> <p>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도 또한 같다.</p>	<p>【668】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p> <p>① 이사와 감사는 감리교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단, <u>외부추천이사의 추천과 선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다.</u><개정></p> <p>②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도 <u>제1항에 의해 선임한다.</u><개정></p>	
	<p>【000】 제16조(임원의 선임의 제한)<신설></p> <p>① 이 법인의 이사는 상호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p>	

현행	개정안	비고
	<p><u>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6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② <u>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신설></u></p>	
<p>【671】 제18조(임원의 직무)</p> <p>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p> <p>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p> <p>③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삭제></p> <p>④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대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재산상황과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전 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전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p>【671】 제19조(임원의 직무)</p> <p>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삭제></p> <p>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대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u>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개정></u> 3. <u>상기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개정></u> 4. <u>상기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개정></u> 	
	<p>【000】 제20조(임원의 보충) 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중에 <u>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신설></u></p>	
	<p>【000】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어느</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p>【000】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그 밖에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p>‘사회복지사업법’ 준용</p>
<p>제4장 이사회</p>	<p>제4장 이사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672】 제19조(이사회 구성)</p> <p>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p> <p>②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1. 정책개발위원회</p> <p>2. 재정위원회</p> <p>3. 수익사업관리위원회</p> <p>③ 그 외에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672】 제23조(이사회 구성)</p> <p>① <좌동></p> <p>②</p> <p>1. <좌동></p> <p>2. 재정·수익사업관리위원회 <개정></p> <p>3. 발전모금위원회 <개정></p> <p>③ <좌동></p>	
<p>【673】 제2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①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p> <p>② 정관의 변경,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p> <p>③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p> <p>④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p> <p>⑤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회복지관장 및 시설장, 기획사무국장, 수익사업체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p> <p>⑥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p> <p>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p>	<p>【673】 제24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①~④ <좌동></p> <p>⑤ 법인의 사무총장, 법인 부서의 장 및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업기관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p> <p>⑥~⑦ <좌동></p>	<p>⑤ ‘사무총장’ 직제 신설</p>
<p>【674】 제21조(이사회 소집)</p> <p>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p> <p>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명요청</p>	<p>【674】 제25조(이사회 소집)</p> <p>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p>	<p>② ‘이사회소집일’ 삽입</p>

현행	개정안	비고
<p>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는 <u>소집한다.</u></p> <p>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u>통지하여야 하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는 <u>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u></p> <p>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전에 각 이사에게 <u>통지한다.<개정></u></p>	
<p>【675】 제22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p> <p>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675】 <u>제26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u></p>	<p>‘원안 ①’을 조문으로 이동</p>
<p>【676】 제2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① 임원 <u>선임</u>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p> <p>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p>	<p>【676】 <u>제27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에</u>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p> <p>① 임원 <u>위임</u>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개정></p> <p>② <좌동></p>	
<p>【677】 제24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모든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참석 이사의 날인을 받아 기획사무국에 <u>비치한다.</u></p>	<p>【677】 <u>제28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모든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참석 이사의 날인을 받아 기획사무국에 비치하고,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한다.<개정></u></p>	<p>‘사회복지사업법’ 준용</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조직 및 직원</p> <p>【678】 제25조(법인 사무조직)</p> <p>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기획사무국을 두고 기획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한다.</u></p> <p>② 기획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p> <p>③ 기획사무국장의 임기는 5년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조직 및 직원</p> <p>【678】 <u>제29조(법인 사무조직)</u></p> <p>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사무총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u></p> <p>② <u>법인의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개정></u></p> <p>③ <u>법인의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u></p> <p>④ <u>법인 기획사무국 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신설></u></p>	

현행	개정안	비고
<p>【679】 제26조(사회복지관 조직)</p> <p>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회복지관에는 관장을 두어 사회복지관을 대표케 하고 통할하게 하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각 사회복지관 규정으로 정한다.</p> <p>② 이 법인에 속한 사회복지관은 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p>③ 관장은 각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p> <p>④ 관장의 임기는 5년이다.</p>	<p>【679】 제30조(사회복지관 조직)</p> <p>① <u>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각 사업기관의 장을 둔다.</u><개정></p> <p>② <u>사업기관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u><개정></p> <p>③ <u>관장 및 시설장은 해당 사업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u><개정></p> <p>④ <u>사업기관의 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의 경우 위탁년한에 의한 3년 또는 5년 일 경우는 그 기간에 준한다.</u><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수익사업</p> <p>【680】 제27조(수익사업의 운영)</p> <p>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1. 부동산 임대사업</p> <p>2. 기타 부대사업</p> <p>② 수익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u>수익사업관리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수익사업</p> <p>【680】 제31조(수익사업의 운영)</p> <p>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1.<좌동></p> <p>2. <u>서비스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교육 서비스, 복지의료 및 기타의료보건 서비스 등)</u> <개정></p> <p>3. <u>제조업(비누 제조, 김치류 제조, 도시락 제조 등)</u><개정></p> <p>4. <u>음식점업(일반 음식, 휴게 음식 등)</u><개정></p> <p>5. <u>도·소매업(전자상거래, 생화 및 비누 소매)</u><개정></p> <p>6. 기타 부대사업</p> <p>② 수익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u>재정·수익</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681】 제28조(수익사업체 조직)</p> <p>①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빌딩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되 그 하부 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p> <p>② 관리사무소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p> <p>③ 관리사무소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p>	<p><u>사업관리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p> <p>【681】 제32조(수익사업체 조직)</p> <p>①<좌동></p> <p>② <u>관리사무소장의 임기 및 선임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u> <개정></p> <p>③ <u>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u></p>	
<p>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p> <p>【682】 제29조(정관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p> <p>【682】 제33조(정관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 <u>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입법의회가 열리지 못할 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과</u>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p>	
<p>【683】 제30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683】 제34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과 <u>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고,</u>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p>	
<p>【687】 제34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을 준용한다.</p>	<p>【687】 제38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u>관계법규</u>를 준용한다.<개정></p>	
	<p><u>부 칙 (2007.6.21)</u></p> <p>【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u>부 칙 (2009.3.23)</u></p> <p>【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09.10.16)</u></p> <p><u>【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0.5.28)</u></p> <p><u>【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1.6.29)</u></p> <p><u>【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1.8.16)</u></p> <p><u>【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1.10.6)</u></p> <p><u>【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2.4.2)</u></p> <p><u>【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2.10.25)</u></p> <p><u>【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3.1.2)</u></p> <p><u>【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5.10.30)</u></p> <p><u>【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8.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p> <p>【692】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p> <p>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에 둔다.</p> <p>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주소지에 분사무소(지부)를 둔다.</p> <p>1호~12호</p>	<p>8.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p> <p>【692】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p> <p>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u>세종로 세종대로 149</u> 감리회관에 둔다.<개정></p> <p>1~12.<좌동></p> <p>13. 대구·경북 분사무소;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71-2 (제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신설></p> <p>14. 경남 분사무소;경남 함양군 안의 대대리 779(봉산보호작업장)<신설></p> <p>15. 남분사무소;경남 함양군 안의 대대리 779(봉산보호작업장)<신설></p>	
<p>【693】 제4조 (사업의 종류)</p> <p>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p> <p>1 ~10 <생략></p> <p>11.<u>영유아보육법에 의한</u>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p>	<p>【693】 제4조 (사업의 종류)</p> <p>1~10<좌동></p> <p>11.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신설></p> <p>12.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신설></p> <p>13. 방문요양서비스시설의 설치운영<신설></p> <p>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사업<신설></p> <p>15. 기부식품 제공사업<신설></p> <p>16.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시설설치 운영 및 위탁 운영<신설></p> <p>17. 이주 외국인과 그 가족에 관한 복지사업<신설></p> <p>18.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업)<신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2.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p><u>19.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신설></u></p> <p><u>20.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개정></u></p>	
<p>【704】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① 이사장(대표이사) 1인</p> <p>② 이사 22인</p> <p>③ 감사 2인(본부 감사 겸임)</p>	<p>【704】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①<좌동></p> <p>② <u>이사 10인<개정></u></p> <p>③<좌동></p>	
<p>【705】 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p> <p>① <u>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목사 1인, 평신도 1인(20인)</u></p> <p>② <u>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1인</u></p> <p>③ <u>복지시설의 대표 2인</u></p> <p>④ <u>재단사무국 총무는 직무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u></p>	<p>【705】 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p> <p>① <u>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1인<개정></u></p> <p>② <u>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평신도 각 3인<개정></u></p> <p>③ <u>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시설협의회 추천 1인<개정></u></p> <p>④ <u>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 선출한 외부이사 3인<신설></u></p> <p>⑤ <u>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직무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신설></u></p>	
<p>【707】 제18조(임원의 임기)</p> <p>①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u></p> <p>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u>제①항에 의한다</u></p>	<p>【707】 제18조(임원의 임기)</p> <p>①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u>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는 【414】 의회법 제119조(총회의 직무) ⑩, 5호를 준용한다.<개정></u></p> <p>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여임기</u></p>	

현행	개정안	비고
	<p><u>로 한다.<개정></u></p> <p>③ <u>임원의 해임: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신설></u></p> <p>1. <u>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신설></u></p> <p>2.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명예 훼손을 끼칠 때<신설></u></p> <p>3. <u>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신설></u></p> <p>4. <u>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신설></u></p>	
<p>【712】 제23조(의결사항)</p> <p>① ~⑪ <생략></p>	<p>【712】 제23조(의결사항)</p> <p>①~⑪<좌동></p> <p>⑫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시설 및 수탁기관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u></p>	
	<p><u>부 칙(2015.10.30.) <신설></u></p> <p><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u></p>	
<p>10.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p> <p>【773】 제8조(기금의 용도)</p> <p>①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쓴다.</p> <p>1.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조달, 통관, 수송, 보관, 취급,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행위, 시설공사 재해 현장에서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 등 구호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p> <p>2. 재해에 대비하여 구호요원이나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 훈</p>	<p>10.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p> <p>【773】 제8조(기금의 용도)</p> <p>①</p> <p>1~3<좌동></p> <p>② 전 항 제3호의 제반 비용은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u>모금 총</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런, 조직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피복, 침구, 도구, 장비 등을 공급, 비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p> <p>3. 재해에 대한 조사, 구호요청에 대한 심사, 구호사무실의 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구호사무실 요원의 인건비, 재해심사 및 구호관련 회의비, 기타 구호사무에 소요되는 비용</p> <p>② 전 항 제3호의 총비용은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u>구호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0%를 넘지 못한다.</u></p>	<p><u>액의 10%를 넘지 못한다.</u> <개정></p>	
<p>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장학재단 정관</p>	<p>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장학재단 정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임 원</p> <p>【804】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p> <p>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u>이사 15인 이내</u></p> <p>2. 감사 2인</p> <p>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임 원</p> <p>【804】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좌동></p> <p>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u>이사 11명</u> <개정></p> <p>2.<좌동></p> <p>②<좌동></p>	
<p>【806】 제19조(이사의 선임방법)</p> <p>① 이사는 <u>감독회장 1인과</u> 각 연회에서 1명씩 추천된 이로 하고, 직무상 사무국 총무, 교육국 총무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감사는 각 연회에서 선임하여 조직된 본부 감사위원회가 추천한 이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 추천시 연회에서 목사 대표, 평신도 대표를 순차적으로 교체 추천한다.</p> <p>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p>	<p>【806】 제19조(이사의 선임방법)</p> <p>① <u>이사는 각 연회에서 1명씩 추천된 사람으로 하고, 직무상 사무국 총무, 교육국 총무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감사는 각 연회에서 선임하여 조직된 본부 감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 추천시 연회에서 목사 대표, 평신도 대표를 순차적으로 교체 추천한다.</u> <개정></p> <p>② <좌동></p> <p>③ <좌동></p>	
<p>12. 금촌부동산 (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규정</p>	<p>12. 금촌부동산 (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규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관리위원회</p> <p>【832】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p> <p>① 재단이사장 1명 ② 본부기본 재산관리위원 5명(위원장및 서기) ③ 재단이사회 선출위원 5명 ④ 총회 실행부 위원회 선출위원 5명 ⑤ <u>묘지 사용권자</u> 5명(감독회장 임명) ⑥ 재단사무국 총무 1명 ⑦ 감사 2명(감사위원 중)</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관리위원회</p> <p>【832】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p> <p>① 재단이사장 1명 ② 본부기본 재산관리위원 5명(위원장 및 서기) ③ 재단이사회 선출위원 5명 ④ 총회 실행부 위원회 선출위원 5명 ⑤ <삭제> ⑤ 재단사무국 총무 1명 ⑥ <u>감사</u> 2명(감사위원 중)</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15. 10. 30)</p> <p>【000】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3.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정관<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이하, ‘법인’이라 함)이라 한다.</p> <p>제2조 (관리, 소재지) 본 법인은 감리회본부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 빌딩)로 한다.</p> <p>제3조 (목적) 법인은 기독교 교화사업 및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① 용문산 기도원 운영 및 분원 설립 운영 ② 용문산 수도원 운영 및 분원 설립 운영 ③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출판, 구호 및 자선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임원</u></p> <p><u>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u></p> <p>① 이사장 1인 ② 이 사 13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감 사 2인</p> <p><u>제6조 (임원의 선임)</u></p> <p>①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는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연회에서 각 1인씩 추천된 이와 애향숙 설립자의 직계 비속 중 1인으로 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인으로 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이사장 외의 임원 중에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p> <p>③ 이사장 외의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p> <p>④ 이사장은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함으로써 그 자격이 부여된다.</p> <p><u>제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u></p> <p>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p> <p>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p> <p>제8조 (임원의 선임의 제한)</p> <p>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 반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p> <p>제9조 (임원의 임기)</p> <p>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③ 이사장의 보선은 교리와 장정[1048]제34조(보궐선거)에 따른다.</p> <p>제10조 (임원의 직무)</p> <p>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여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p> <p>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현행	개정안	비고
	<p>5. <u>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u></p> <p><u>제1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u></p> <p>① <u>이사장이 사고·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리와 장정 [1049]제35조(직무대행)①이 따른다.</u></p> <p>② <u>전임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전임 이사장은 후임 이사장이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하고 후임 이사장으로 등기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u>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의 궐위시부터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직무는 현 감독중에 연장자가 대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이사회</u></p> <p><u>제12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u></p> <p><u>제13조 (소집)</u></p> <p>① <u>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u></p> <p>② <u>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u></p> <p>③ <u>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제1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내에</u></p>	

현행	개정안	비고
	<p><u>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1. <u>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u> 2. <u>제1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u></p> <p><u>제15조 (서면결의)</u></p> <p>① <u>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u></p> <p><u>제16조 (의결정족수)</u></p> <p>① <u>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u></p> <p>② <u>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u></p> <p><u>제17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u></p> <p>1. <u>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u> 2. <u>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u> 3. <u>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u> 4. <u>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u> 5. <u>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u> 6. <u>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u> 7. <u>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u> 8. <u>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u>제18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현행	개정안	비고
	<p>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재산과 회계</p> <p>제19조 (재산의 구분)</p> <p>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p> <p>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p> <p>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p> <p>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0조 (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 (매도 증여 교환 등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제21조 (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p> <p>제22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23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p> <p>제24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25조 (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p>	

현행	개정안	비고
	<p>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p> <p>제26조 (계속비)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p> <p>제27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p> <p>제28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p> <p>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p>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p> <p>제2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 사무 부서</u></p> <p>제30조 (사무국)</p> <p>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p>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31조 (법인해산)</p> <p>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p> <p>제3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33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및 당해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4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현행	개정안	비고												
	<p><u>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u></p> <table border="1" data-bbox="1075 287 1590 582"> <thead> <tr> <th>직 위</th> <th>성 명</th> </tr> </thead> <tbody> <tr> <td>설립자</td> <td>나 운 몽</td> </tr> <tr> <td>이 사</td> <td>박 만 출</td> </tr> <tr> <td>이 사</td> <td>이 진 규</td> </tr> <tr> <td>이 사</td> <td>나 병 상</td> </tr> <tr> <td>이 사</td> <td>지 용 성</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5. 10. 30)</u></p> <p><u>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 규정(000조, 000조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경과규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은 2016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전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통합하고 총회에 보고한다.</u></p>	직 위	성 명	설립자	나 운 몽	이 사	박 만 출	이 사	이 진 규	이 사	나 병 상	이 사	지 용 성	
직 위	성 명													
설립자	나 운 몽													
이 사	박 만 출													
이 사	이 진 규													
이 사	나 병 상													
이 사	지 용 성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6편 교역자 은급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85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신(新)은급제도’라 함은 기존의 은급제도가 저금리, 고령화로 인하여 기금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은퇴은급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은퇴은급금 제도를 적용하고,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교회지원액’과 ‘본인납입액’을 납부한 후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기존의 은퇴은급금에 해당하는 감리연금 및 은퇴시기에 따라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추가로 받는 것과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 및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지급받는 것을 요지로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p> <p>② ‘교역자’라 함은 연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협동회원을 말한다.</p> <p>③ ‘은퇴’라 함은 연회원 교역자로서 70세(3월 말 기준)가 된 후에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의 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p> <p>④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별세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부모 및 직계자녀(미성년자)를 말한다.</p> <p>⑤ ‘허입부담금’이라 함은 허입예정자가 연회 허입시 해당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p> <p>⑥ ‘교역자은급부담금’이라 함은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감리회 소속교역자가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p>	<p style="text-align: center;">제6편 교역자 은급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85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삭제></p> <p>②<좌동></p> <p>③ ‘은퇴’라 함은 연회원 교역자로서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개정></p> <p>④<좌동></p> <p>⑤ ‘허입은급부담금’이라 함은 허입예정자가 연회 허입시 해당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p> <p>⑥ ‘교역자은급부담금’이라 함은 서리 담임자를 제외한 모든 감리회 소속 교역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p> <p>⑦ ‘교회은급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서 전년도 정상수입 결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p> <p>⑧ ‘본인납입액’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한 후 납부하는 월 납입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기존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폐지된다.</p> <p>⑨ ‘교회지원액’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한 후 납부하는 월 납입액 중 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기존의 ‘퇴직적립금’은 폐지된다.</p> <p>⑩ ‘월 납입액’이라 함은 신(新)은급제도에 따라 교역자 및 교회가 매월 각 납부하여야 하는 교회지원액과 본인납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그 기준금액은 20만원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에서 정한다.</p> <p>⑪ ‘은급기금보조금’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65세 이후에 은퇴하여 감리연금 수령시 은퇴은급금 기준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⑦ ‘교회은급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서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p> <p>⑧~⑩<삭제></p>	
<p>【853】 제3조(적용범위)</p> <p>① 이 법을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와 선교기관에서 시무하는 연회원 교역자에게 적용한다.</p> <p>②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시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p>	<p>【853】 제3조(적용범위)</p> <p>① 이 법을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와 <u>총회와 연회에서 인준한</u> 기관에서 시무하는 연회원 교역자에게 적용한다. <개정></p> <p>②<좌동></p> <p>③ <u>총회와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위원회,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불성실 교역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의 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u> <신설></p> <p>④ 은급부담금을 성실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가질 수 없다. <신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854】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3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 또는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에 당해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u>허입부담금으로</u>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u>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u></p> <p>②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u>교역자은급부담금으로</u>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u>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u></p> <p>③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연회원 허입시에 매월 ‘<u>본인납입액</u>’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는 매월 ‘<u>교회지원액</u>’을 납부하여야 하고, ‘<u>교회지원액</u>’은 위 교역자가 감리연금 가입시 매월 납부하기로 확정된 ‘<u>월 납입액</u>’의 2분의 1 이상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⑤ <u>신(新)은급제도 시행에 있어 미자립교회 등 재정이 어려운 교역자 및 소속 개체교회는 감리연금 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에서 정한다.</u></p> <p>⑥ <u>신(新)은급제도 시행 이후 서리교역자는 허입예정자와 동일하게 신(新)은급제도를 적용한다.</u></p> <p>⑦ <u>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는 매년 은급부담금을 은급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854】 제4조(기금의 조성과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3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 또는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에 당해 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u>허입은급부담금으로</u>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u>허입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u> <개정></p> <p>② <u>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u> <개정></p> <p>③ <u>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체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u> <개정></p> <p>④ <u>은급재단에 기금 또는 자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된 자산과 기금은 증여자가 명시한 목적대로 은급규정의 제도 안에서 운용한다. 다만 증여자에 대한 예우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u> <신설></p> <p>⑤~⑥<삭제></p> <p>⑦<좌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은급재단이사회</p> <p>【856】 제6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① 직권상 이사 : 감독회장</p> <p>② 선출직 이사 : 각 연회에서 선출한 <u>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u> 각 1명</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은급재단이사회</p> <p>【856】 제6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p> <p>①~②<좌동></p>	
<p>【857】 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은급사업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p> <p>②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및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p> <p>③ 교역자은급법안의 개정초안의 심의</p> <p>④ 교역자은급법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 또는 규칙제정 초안 및 개정초안 심의</p> <p>⑤ 임원선출</p> <p>⑥ 기금운용 방법의 채택</p> <p>⑦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인준</p> <p>⑧ 그 밖에 교역자은급사업에 관한 중요사항</p>	<p>【857】 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u>다음과</u> 같다. <개정></p> <p>①~②<좌동></p> <p>③ 교역자은급법 개정초안의 심의 <u>및 개정안의 제안</u> <개정></p> <p>④ 교역자은급법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 또는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초안 심의와 <u>개정안 제안</u> <개정></p> <p>⑤~⑧<좌동></p>	
<p>【859】 제9조(이사의 임기) 은급재단이사의 임기는 <u>다음 각 항과</u> 같다.</p> <p>① 직권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p> <p>②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859】 제9조(이사의 임기) 은급재단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u>다만,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개정></p> <p>①~②<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은급기금 운용</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은급기금 운용</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862] 제12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p> <p>① 기금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p> <p>② 기금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전액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으로만 사용한다.</p>	<p>[862] 제12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p> <p>① 은급기금은 반드시 제1금융권 <u>예치 및 국공채 매수 등으로 운영 한다.</u> <개정></p> <p>② 은급사업비는 기금 중에서 사용한다. <개정></p> <p>③ 수익사업은 기금의 30% 내에서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운영한다. <신설></p>	
<p>[863] 제13조(은급부의 설치)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사무국 안에 은급부를 둔다.</p> <p>① 은급부에 부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p> <p>② 부장은 사무국 총무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명한다.</p> <p>③ 은급부 부장 및 직원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p>	<p>[863] 제13조(은급재단의 설치)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u>감리회본부</u>에 은급부를 둔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삭제></p> <p>② 은급부 직원은 <u>임용과</u> 동시에 재정보증<u>보험</u>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은급금의 급여</p> <p>[866]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한 해부터 기산하며 회원이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회 미납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한다. 협동회원은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은 해로부터 기산하며 협동회원 전도사의 경우에는 1975년부터 기산한다. 재허입 회원은 재허입부터 기산하며 이전의 재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②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휴직하거나 정직한 기간 및 교회은급부담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은급금의 급여</p> <p>[866]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은 <u>시행규정을 따른다.</u><개정></p> <p>① <u>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부담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u> <개정></p> <p>② <u>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 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u> <개정></p> <p>③ <u>정년은퇴나 자원은퇴, 공상은퇴 및 공상퇴회자는 연회에서 은퇴 및 퇴회를 하여야 한다.</u> <신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20년 이상 연회 회원으로 재직하고 소속 연회에서 65세(3월 말일 기준) 이상이 되어 자원은퇴한 교역자는 정년은퇴까지의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한다.</p> <p>④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여 3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재직기간만큼 은급금 혜택을 받되 65세부터 지급한다.</p> <p>⑤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연회에서 공상은퇴할 수 있다. 단,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감리연금 약관에 준한다.</p> <p>⑥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감리회에서 부부 목사(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하고 은퇴하여 부부가 동시에 은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에게 동일한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p> <p>⑦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 중 은퇴은급금과 유족은급금을 동시에 지급받게 될 경우는 수혜자의 선택에 따라 한 가지만 지급한다.</p> <p>⑧ <u>감독회장으로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였을 경우 정년은퇴까지의 잔여기간 50%를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은급금을 지급한다.</u></p>	<p>④ <u>30년 이상 연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재직기간만큼 은급금 혜택을 받되 65세부터 지급한다. <개정></u></p> <p>⑤ <u>교역자가 미파, 유학, 휴직, 정직 기간 및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u></p> <p>⑥ <u>교역자가 미파인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휴직으로 간주한다. <개정></u></p> <p>⑦ <u>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 공상자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라고 하는 판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u></p> <p>⑧ <삭제></p> <p>⑧ <u>교역자 중 순교자 및 피랍 교역자는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시까지로 목회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 <신설></u></p> <p>⑨ <u>교역자의 휴직기간과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u></p> <p>⑩ <u>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 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 해 을 경우 국외 거주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 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신설></u></p> <p>⑪ <u>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고 실제로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운영·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신설></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867】 제17조(유족의 범위 및 유족은급금 수령 우선순위) 유족 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다만,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18세 미만의 자녀 3. 60세 이상의 부모(다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p>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한다.</p>	<p>【867】 제17조(유족의 범위 및 유족은급금 수령 우선순위) 유족 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동> 2. <좌동> 3. <좌동> <p>② <삭제></p>	
<p>【868】 제18조(유족은급금의 일시지급)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p> <p>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은퇴한 교역자 및 그 유족이 국외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의 20개월 해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p>②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갠리연금 운용약관에 준한다.</p>	<p>【868】 제18조(유족은급금의 일시지급) 유족은급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p> <p>①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은퇴교역자의 유족</u>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u>재직교역자의 유족</u>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p>②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수납과 지급방법</p> <p>【869】 제19조(납입방법) 위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u>허입부담금</u>’, ‘<u>교역자은급부담금</u>’, ‘<u>본인납입액</u>’, ‘<u>교회지원액</u>’ 및 ‘<u>교회은급부담금</u>’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수납과 지급방법</p> <p>【869】 제19조(납입방법) 위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u>허입은급부담금</u>’, ‘<u>교역자 은급부담금</u>’ 및 ‘<u>교회은급부담금</u>’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① <u>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허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u>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1회 납부하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2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③ <u>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을 교역자가 연회에 입회한 달의 말일 이내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 본인납입액을 매 월 말일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u></p> <p>④ 은급부담금은 각 개체교회에서 1년에 1회,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월액으로 분할하여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u>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교역 중인 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개체교회는 교회지원액을 매월 말일 이내에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⑥ <u>제도 시행 이후 서리교역자는 허입예정자와 동일하게 상기 제1~5항을 적용한다.</u></p>	<p>① <u>허입은급부담금 :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 당해년도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u></p> <p>② <u>교역자은급부담금</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역자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u> <u>2. 교역자가 연회원 허입시에 허입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개정></u> <u>3. 교역자가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시 10%의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u> <p>③ <u>교회은급부담금 :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 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체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u></p> <p>④ <좌동></p> <p>⑤ <삭제></p> <p>⑥ <삭제></p>	
<p>【871】 제21조(지급)</p> <p>① 은퇴은급금, <u>감리연금</u> 및 유족은급금의 지급은 본인 또는 유족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수령자를 확정된 후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령 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p> <p>② 은급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정에서 정한다.</p>	<p>【871】 제21조(지급)</p> <p>① 은퇴은급금 및 유족은급금의 지급은 본인 또는 유족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수령자를 확정된 후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p> <p>② <좌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다.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5. 10. 30)</u></p> <p>【8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